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11. 22., 이흥민 의원 외 9인
- 나. 회부일자 : 2019. 11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(2019. 12. 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권영숙 의원

1) 제안이유

마포구의 경제·사회·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의 목적, 정의, 공동이용시설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주민의 참여와 주민협의체의 설립(안 제4조~제5조)
- 다.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(안 제6조~제7조)
- 라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,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- 마.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(안 제10조)
- 바.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1조)
- 사.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지원 및 환수(안 제12조~제13조)
- 아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(안 제14조)

3)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2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11. 21.~ 11. 25.(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조례 제정 배경

도시의 주거환경이 경제·사회·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계획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적극적인 도시 활성화를 이루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도시재생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.(안 제1조~제3조)
-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의 주민의 참여와 주민협의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-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~제9조)
-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등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)
-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1조)
-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2조~제13조)
-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함.
(안 제14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15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기존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오면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쇠퇴한 도시를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적인 사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주민이 적극적,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인문, 사회, 교육, 복지,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, 도시재생위원회, 사업추진협의회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지원과 건축 규제의 완화 특례 등을

통해 민·관 협력 사업의 대표성을 띠고 있음.

- 다만, 서울시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, 법정·비법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도시의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법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.
- 현재 마포구는 비법정 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3개소(합정, 연남, 망원1동)가 진행되고 있으며,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상위20%에 해당되어 강남3구와 같이 서울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배제되어 있음.
-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- 기타 예산의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수익 발생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